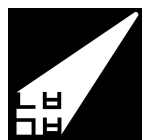


# 내부제보실천운동

## 2020년 제5회 정기총회

### (서면총회)

- 일시 : 2021년 2월 4일~7일
- 장소 : 서면총회



내부제보실천운동



# 차 례

의장인사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상임대표 인사	
전차 회의록 승인	5
상정의안	19
제1호 의안 : 2020년 종합감사 보고 및 승인의 건	21
제2호 의안 : 2020년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의 건	23
제3호 의안 : 3기 대표단, 감사 선출 및 상임고문단 추대의 건	33
제4호 의안 :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35
제5호 의안 : 기타 안건	40
부록	42
정관	44
회원명단	53



# 전차 회의록 승인





# 2020년 제4회 (서면)총회 회의록

일시 : 2020년 4월 4일(토)~4월 7일(화)

장소 : 온라인 서면으로 진행

내부제보실천운동

## 2020년도 제4회 내부제보실천운동 총회 회의록

0.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전사회적 노력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제보실천운동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2020 제 4회 정기총회를 서면총회로 대체 진행을 3월 25일 온라인 운영위원회를 통해 의결, 아래와 같이 일정과 방법을 결정하여 2020년 제4회 총회를 온라인 서면총회로 진행한다.

### ◆ 서면 총회 일정

- 3월 26~29일 : 총회 공지 및 자료집 발송(메일/문자/우편 등)
- 3월 30일~4월 3일 : 안전관련 의견 수렴
- 4월 4일(토)~7일(화) : 온라인 서면 총회 진행

### ◆ 온라인 서면 총회 방법\_구글독스

구글독스 링크를 통해 각 안건에 대한 가부 의결  
(구글독스 활용이 어려운 회원들은 위임 가능)

### ◆ 의 안 :

- 제1호 의안. 2019년 종합감사 보고 및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2019년 사업보고 및 결산(안) 승인의 건
- 제3호 의안.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 제4호 의안. 상임대표 선출의 건
- 제5호 의안. 기타 안건

### ◆ 서면총회

4월 4일(토)~7일(화) 기간 중 구글독스를 통해 각 안건에 대해 의결해주시기 바랍니다.

### ◆ 자료집

각 섹션마다 안건 내용을 올려드립니다.

전체 자료집은 아래 링크를 통해 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gobal1004.com/new/write\\_view.php?table=news&idx=72](http://www.gobal1004.com/new/write_view.php?table=news&idx=72)

1. 일시 : 2020년 4월 4일(토)~4월 7일(화)

2. 장소 : 온라인 서면으로 진행



3. 참가회원 : 81명중 58명 (참여 27명, 위임 31명, 불참 23명)

4. 상임공동대표 인사 : 온라인 서면 대체

5. 의장 인사 : 온라인 서면 대체

6. 성원확인 및 회원점명 : 온라인 서면 대체

7. 개회선언 : 온라인 서면 대체

8. 서기지정 : 온라인 서면 대체

9. 전차 회의록 승인

서면 투표 결과

찬성	반대	기권
27	0	0

10. 의안 채택

운영위 결정에 따라 3월 26~29일 중 총회 공지 및 자료집 발송(메일/문자/우편 등)하여, 3월 30일~4월 3일 중 안건관련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의안을 상정 하다.

제1호 의안. 2019년 종합감사 보고 및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2019년 사업보고 및 결산(안)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상임대표 선출의 건

제5호 의안. 기타 안건

11. 부의안건 심의

가. 2019년 종합감사 보고 및 승인의 건 : 아래 서면 투표 결과 참여회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승인하다.

서면 투표 결과

찬성	반대	기권
27	0	0

## 감사보고서

내부제보실천운동의 2019년도 활동과 업적을 점검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1. 총평:

(1) 2019년도 지출은 계획된 사업 활동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수입과 지출에 대한 보고서가 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매 월말마다 정확하게 게시되어 보고가 잘 이루어졌음을 확인했습니다.

(2) 전체적인 수입이 전년대비 크게 감소하였으나, 형편에 맞게 적절한 지출로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였습니다. 그러나 단체 회원 및 회비 증대의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3) 상임대표단 교체 이후, 조직적인 안정화가 일정부분 이뤄졌으나 단체 사업의 활성화와 조직적 확대 및 재원 마련 등의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 2. 조직·재정

(1) 2019년 초반 임원교체 등의 혼란기에 회원 수가 소폭 감소하였으나, 이후 상담을 통한 회원 증대를 통해 2018년도 수준의 회원 및 회비 수입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후원금 조직과 기타수입이 급격하게 감소된 바, 전체적인 재정은 전년도 대비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회원 및 회비수입 증가를 위한 임원진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합니다.

(2) 전년에 비해 상담 이후 자발적으로 가입한 회원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조직적 결속력과 회원간 유대감 형성에 각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3) 단체 결성 4년차를 맞이하여, 단체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공익제보자 상담 지원의 역량 강화를 통한 사업 활성화, 일반회원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캠페인,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회원과 재원의 확보 노력이 요청됩니다.

2020년 2월 29일

내부제보실천운동 감사 이석만 

나. 2019년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의 건 : 아래 서면 투표 결과 참여회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승인하다.

서면 투표 결과

찬성	반대	기권
27	0	0

**내부제보실천운동 2019년도 사업연혁**

- [운영위]1월 5일 1차 운영위원회
- [운영위]2월 20일 2차 운영위원회
- [정기총회]2월 27일 3차 정기총회
- [상담]3월 6일 심리상담사,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건설현장 노동자 관련 상담 3건 접수(배현봉 회원)
- [상담]3월 12일 영농조합 관광선박 내부제보
- [입장서]4월 2일 유선주 공정위 심판관리관 공익신고에 대한 입장 발표
- [입장서]4월 3일 유선주 공정위 심판관리관 공익신고에 대한 입장 수정 발표
- [상담]4월 중 장자연 관련 제보, 기아자동차 영업소 부당판매 내부제보, 양재R&CD혁신허브 내부고발 3건 접수
- [상견례]4월 16일 국민권익위원회 상견례
- [운영위]4월 26일 3차 운영위원회
- [입장서]5월 3일 유선주 국장 보호조치 요청 권익위 기각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 [회원가입]5월 중 이탁연(양재혁신허브 내부고발자), 진용용(용화여고 교수)
- [연대]5월 30일 동구학원 정상화 결의대회
- [상담]6월 중 대구대 교수 부당처분에 대한 건, 정부기관(연구소) 직장 내 갑질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건
- [상담]6월 10일 기아자동차 영업소 부당판매 내부제보자 면담
- [인터뷰]6월 21일 전교조 기관지 교육희망 인터뷰(박현영, 김주언, 안종훈 참석)
- [기타]7월 1일 기부금품 모집 등록 완료 및 시행
- [입장서]7월 8일 양재혁신허브에 대한 서울시 감사결과 규탄 입장 발표
- [공문]7월 10일 양재혁신허브에 대한 서울시 감사결과 관련 입장 공문발송(서울시, 카이스트, 감사실)
- [상담]7월 중 육주학원 해직교사 서울시교육청 상대 민주화운동관련자 특별채용거부 취소 소송에 대한 건,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 내부제보에 따른 보복 건,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투자사기 사건 피해자 대책위 지원요청 건
- [회원가입]7월 중 김도리(육주학원 해직교사)
- [운영위]7월 12일 4차 운영위원회
- [연대]7월 19일 유선주 국장 징계위 관련 피켓팅
- [회원의 날]7월 22일 2019년 회원의 날 하계 야유회
- [회원가입]7월 중 유혜림(문화예술계 활동가), 김미덕
- [회원가입]8월 중 이종인
- [상담]9월 중 평택대 교수&직원회 대표 양단희 교수 부당 해임 건, 차성복 소령 공익제보 건, 목포 삼학도 석탄부두 공익제보 건

- [상담]10월 중 순창요양병원 공익제보 건
- [친목]10월 7일 친목 모임 진행
- [공문]10월 28일 순창요양병원 공익제보 관련 조사기관 의견서 발송
- [운영위]11월 8일 5차 운영위원회
- [공문]11월 21일 차성복 소령 탄원서 발송
- [외부]11월 21일 서울시 교육청 공익제보센터 민관협력네트워크 참여
- [공문]12월 6일 순창요양병원 공익제보 관련 수사기관 내용증명 발송
- [이문옥 밝은사회상]12월 10일 심사위원회 진행
- [회원가입]12월 11일 전영숙 부부(로타리 클럽 공익제보자)
- [운영위]12월 14일 5차 운영위원회
- [연말행사]12월 21일 2019 이문옥 밝은사회상 및 송년의 밤
- [상담]12월 중 포천 가산파출소 소장 비위 및 갑질제보, 공동주택 도,시보조금 지원 사업 악용 사례 공익 제보, 경기가족여성연구원 공익제보 이후, 부당해고 사례,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협의회 후원강요 내부제보
- [공문]12월 중 순창요양병원 공익제보 건 관련 의견서
- [공문]12월 24일 포천 가산파출소 공익제보자 징계 관련 의견서

## 1

## 2019년 사업보고

## □ 총평

- 내부제보실천운동 2기가 출범하면서 단체의 조직적 안정과 새로운 사업 구상 등이 주요 과제로 설정되었음. 적절한 정관 일부 개정을 통해서 의사결정단계를 간소화하였고, 이는 단체 운영의 효율성 증대로 이어졌음.
-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 내부고발자들의 확산과 사회적 문제는 지속 되었으나, 단체의 조직적 개편 과정 속에서 단체가 확장된 사업을 진행하기는 어려움이 있었음.
- 단체와 관계를 지속해온 내부고발자 외에도 많은 내부고발자들이 단체와 함께 하였고, 국민권익위의 한계, 제보 이후의 다양한 형태의 불이익 등으로 많은 내부고발자들이 위축되고 고초를 겪는 상황은 반복되어 왔음.
- 내부제보실천운동은 발족 이후 지금까지 내부고발자들에 대한 법·제도적 지원, 사회·경제적 지원, 심리적 안정 지원 등을 위해 활동하였음. 그 결과 적절한 시기마다 내부고발의 이슈를 사회적으로 부각시켰고, 다양한 층위의 내부고발자들에 대한 지원의 폭이 확장되었음.
- 그러나 목표로 하였던 입법활동과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은 실제 사업화 되지 못하였으며, 조직적 안정이 우선과제로 부상한 상태에서 재정적 문제와 여러 환경적 변화 등의 요인에 의해 상담지원 외 사업에 대한 확장성은 부족했음.
- 한편 추가적인 공동대표 선출은 2020년도 내부제보실천운동의 새로운 힘이 될 것으로 보임. 특히,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타 공익제보자 지원 단체들과의 공조를 통해 사회적으로 확장된 사업을 기획하고, 그 성과가 단체로 환류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함. 그러나 현재 반복되는 재정적 어려움과 조직적 확장이 부족 등은 향후 주요 과제로 여겨지며, 운영위의 체계를 강화하여, 내부고발자 지원 역량을 강화해야 함.

## □ 주요 사업 성과

- 유선주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공익신고 지원
- 동구학원 정상화 결의대회 연대
- 전교조 기관지 교육희망 인터뷰
- 회원 워크샵, 친목모임 진행
- 서울시 교육청 공익제보센터 민관협력네트워크 참여(IACC 워크숍 준비)
- 2019 이문옥 밝은사회상, 및 송년의 밤

□ 한계

- 법, 제도적 개선이 전무한 상황에서 내부고발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마련이 필요함.
- 단체 차원에서 내부고발자에 대한 상담과 지원의 전문성과 전문적 네트워크 마련이 필요함.
- 조직 확장과 재정마련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마련이 필요함.

**2** 2019년도 결산서

○ 결산(2019.1.1. ~ 12.31.)

수 입				지 출						
항	목	금액	비고	관	항	목	금액	비고		
이월금	이월금	198,917		경상비	일반관리비	임대료	600,000			
						CMS 사용료	660,000			
						통신/발송	634,304			
						소모품비/교통비	575,259			
						행사비	송년의 밤		1,831,660	
기타	업무추진비	178,500								
						소계	<b>4,479,723</b>			
회비수입	정회원회비	11,094,310		경상비	행사비	송년의 밤	1,831,660			
						기타	업무추진비		178,500	
후원수입	후원금	1,500,000		사업비	내부제보지원	상담센터	17,800			
사업수입	행사수입	810,000				이문옥밝은사회상	1,000,000			
기타수입	결산이자 등	230,240				사업비	회의비		총회	203,380
									운영위	229,300
									워크샵	회원워크샵
						소계	<b>1,847,590</b>			
인건비	급여			인건비	급여	활동가급여	6,416,020			
						소계	<b>6,416,020</b>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경조비	경조비	483,500			
						기타(세금,수수료 등)	기타(세금,수수료 등)		56,400	
							소계		<b>539,900</b>	
<b>총 수입</b>		<b>13,833,467</b>		<b>총 지출</b>		<b>13,283,233</b>				
						2019년 잔액 (수입-지출)		550,234		

다.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 아래 서면 투표 결과 참여회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승인하다.

서면 투표 결과

찬성	반대	기권
27	0	0

## 1 2020년 내부제보 사업계획(안)

### □ 정세 및 과제

- 사회 전반에서 내부제보가 확장되고 있으나, 이를 지원할 제도적, 실질적 기반이 부족한 상황. 조국사태 이후 진영논리가 강고해졌고, 내부제보에 대한 사회적 이슈의 파급력이 부족함.
- 총선 시기와 맞물려 공익제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이 필요.
- 단체의 내적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상담을 비롯한 공익제보자 지원에 대한 인프라와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 제보자 상담에 대한 질적 역량 확충이 필요.
- 단체 결성 4년 차를 맞이하여, 조직의 질적,양적 확장이 필요. 신규 회원을 비롯하여 회원 간 유대감과 연대관계 구축이 필요.

### □ 사업목표

- 총선 시기 집중사업 : 내부고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 발표 및 제안 및 총선 이후 입법 활동으로 확장.
- 내부고발자 지원을 위한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 친목 및 연대 사업 확장을 통해 회원 간 유대관계 형성.
- 서울시 교육청 공익제보센터 민관협력네트워크 참여를 통해 2020년 IACC 워크숍(국제반부패회의)을 공동기획 하고, 이를 통해 단체 홍보.

### □ 역점사업

- 총선 사업 :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후보자 공약제안, 각 정당 정책제안, 협약식 등을 진행, 이후 입법 활동을 위한 네트워크를 마련. 일련의 과정에서 단체 및 공익제보자들의 사안을 사회적 이슈로 부상.
- 제보자 상담지원 :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문가 그룹을 형성하고, 상담 및 지원에 대한 체계 마련.
- 서울시 교육청 공익제보센터 민관협력네트워크 : 2020년 IACC 워크숍(국제반부패회의) 공동기획을 통해서 타 단체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단체를 적극 홍보.
- 모금 사업 : 단체 재정마련 및 공익제보자 지원을 위한 모금 사업 진행.(온/오프라인)

### □ 기타사업

- 조직사업 : 1년에 최소 1회의 회원 워크샵 진행.
- 홍보사업 : 다각적인 SNS활용을 통해 단체 및 단체활동 홍보
- 캠페인 사업 : 내부고발자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진행
- 연대 사업 : 공익제보 이후, 투쟁 중인 사업장과 연대관계 구축
- 내부고발자 권익 침해 사례조사 및 대응

### □ 기대효과

- 내부고발자 권익 증진과 사회적 인식 개선
- 단체의 내부적 조직 강화를 통해, 공익제보 활동의 구심점 마련

- 내부고발자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으로 제보활동 촉진
- 사업예산 총액 : 총액 31,550 천원
- 세부사업계획
  - 1) 회 의
    - 총회개최(연 1회)
    - 운영위원회(분기별 1~2회)
  - 2) 총선 대응 정책마련 및 입법활동 추진
    -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비롯한 총선시기에 맞춰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정책,공약 제안 및 협약식 진행.
    - 총선 이후, 타 단체들과 함께 입법활동 추진
  - 3) 제보자 지원활동
    -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문가 그룹 형성 및 네트워크 마련으로 제보자 지원활동의 전문성과 체계성 강화
  - 4) 조직활동
    - 회원 워크샵 : 정기적인 회원 워크샵 진행
  - 5) 홍보활동
    - SNS 활용 : 다각적인 SNS 활용
    - 캠페인 진행 : 공익제보자 인식개선 및 신고절차 매뉴얼 등
  - 6) 서울시 교육청 공익제보센터 민관협력네트워크
    - 2020 IACC 워크숍(국제반부패회의)
    -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 공동사업 제안
  - 7) 연대사업
    - 내부제보자 투쟁현장 상시연대 : 현재 진행 중인 투쟁현장을 확인하여, 적극적인 연대활동 전개
  - 8) 재정사업
    - 기부금품 모집 사업

## 2 2020년도 내부제보실천운동 예산(안)

수 입				관	지 출			
항	목	금액	비고		항	목	금액	비고
회비수입	정회원회비	13,000,000		사 업 비	입법활동	토론회	500,000	
						입법활동비	800,000	정책제안
내부제보지 원	제보자지원	1,000,000	연대사업 포함					
	상담지원	1,000,000						
	이문옥밝은사회상	3,000,000						
회의비	총회	500,000						
	운영위원회	500,000						
워크샵	회원워크샵	1,000,000						
홍보비	홍보기획비	500,000						
후원수입	후원금	5,000,000						
사업수입	행사수입	3,000,000						
기타수입	기부금 모집	10,000,000						
전년도		550,234						

이월								
				경상비	모금	기부금 모집	10,000,000	
					소계		<b>18,800,000</b>	
					일반 관리비	임대료		600,000
				통신/발송비			800,000	우편 등
				소모품비			600,000	
				교통비			400,000	
				행사비	송년회		2,000,000	
					기타	업무추진비	200,000	
					소계		<b>4,600,000</b>	
				인건비	인건비	활동가급여	7,200,000	60만×12
						용역급여	-	
						퇴직급여	-	
						4대보험	-	
						후생기타	-	
				소계		<b>7,200,000</b>		
예비비	경조비		500,000					
	기타		450,234	수수료 등				
	소계		<b>950,234</b>					
	수입	<b>31,550,234</b>						
					지출	<b>31,550,234</b>		

라. 상임대표 선출의 건 : 아래 서면 투표 결과 참여회원 27중 찬성26, 반대0명, 기권 1명으로 원안대로 승인하다. 기권관련 서면 의견은 새로 추천된 대표 후보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으로 제출되다.

서면 투표 결과

찬성	반대	기권
26	0	1

### 추천근거 및 배경

#### 1. 회의록

회의일시	2019년 11월 8일 (금) 19시 00분	회의명	운영위원회 회의	작성자	안드레
참석대상( 11명)	권희청, 김민규, 김주언, 김형남, 박현영, 배병태, 송병춘, 안종훈, 이영이, 장경선, 전경원				
참석자( 5명)	김민규, 김형남, 박현영, 배병태, 장경선				
불참자( 6명)	권희청, 김민규, 김주언, 송병춘, 이영이, 전경원				
참관( 1명)	안드레(간사)				



	나. 내용	다. 비고
가. 토의 내용	<p><b>제 5호 안건 : 기타 안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헌영 대표가 단체 대표 추가 선출의 건을 상정하고, 김형남 변호사를 추천하다. 김형남 변호사를 제척하고, 운영위원 4인 중 4인 전원 찬성으로 본 안건을 의결하다. 이후 2월 총회에 위 안건 상정을 결의하다.</li> <li>- 사무총장 체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한다.</li> </ul>	
<p><b>추천 안</b> <b>現 상임대표</b> 김주언(85년 보도지침 폭로사건 언론공익제보자) 박헌영(국정농단 내부제보자) 송병춘(前 서울시 감사관)</p> <p><b>추가 상임대표 선출(1인)</b> <b>김형남(現 법률지원단장, 변호사)</b></p>		

마. 기타 안건 : 서면총회 결과 기타 안건 없음을 확인하다.


바. 추가 의견 : 서면총회 결과 다양한 격려와 감사와 관련된 추가의견과 국가인권위 내부제보 유출 건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과 촉구에 대한 요청의 추가의견을 확인하다.


12. 폐회선언 : 4월 7일 자정을 기해 온라인 서면 총회를 폐회하다.

총회의 의사 진행의 경과와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서기가 기명 날인하다.

2019년 4월 8일

내부제보실천운동

의장 : 박헌영 

서기 : 안드레 



# 상정의안





# 제 1호 의안

## 2020년 종합감사 보고 및 승인의 건

의결 주문 : 2020년 종합 감사 보고서를 승인하다

제의 관계 조항 : 정관 제 15조 8항

## 감사보고서

내부제보실천운동의 2020년도 활동과 업적을 점검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1. 총평

(1) 2020년도 지출은 계획된 사업 활동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수입과 지출에 대한 보고서가 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매 월말마다 정확하게 게시되어 보고가 잘 이루어졌음을 확인했습니다.

(2) 코로나 사태로 전체적인 수입이 전년대비 다소 감소하였고, 재정적 어려움이 있어 보였으나, 형편에 맞게 적절한 지출로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였습니다. 그러나 단체 회원 및 회비 증대의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3) 상임대표단 및 운영위원 충원으로 조직적 안정화와 운영 체계를 갖춘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단체 사업과 조직 전반이 정체되어 있어 향후 조직적 확대와 재원 마련의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 2. 조직·재정

(1) 2020년 코로나 사태로 인한 혼란기 속에서도 회원 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였습니다. 활발한 상담 활동에 비해 회원수가 2019년과 대비하여 증대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회원 및 회비수입 증가를 위한 임원진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합니다.

(2) 코로나 사태로 조직사업과 단체 내부 워크샵 등이 원만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향후 조직적 결속력과 회원 간 유대감 형성에 각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3) 단체 2기 운영진의 노력과 IACC 국제반부패회의 참여, 시의적절한 간담회, 입장문 발표와 기자회견 등 여러 사업을 통해 단체의 위상을 확보한 만큼, 단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익제보자 상담 역량 강화를 통한 사업 활성화, 회원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캠페인,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회원과 재원의 확보 노력이 요청됩니다.

2021년 1월 18일

내부제보실천운동 감사 이석만 

제 2호 의안  
**2020년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의 건**

의결 주문 : 2020년 사업 보고 및 결산을 승인하다

제의 관계 조항 : 정관 제 15조 3항

## 내부제보실천운동 2020년도 사업연혁

- [이문옥 밝은사회상]1월 8일 김OO 수상자 상장 및 상패 전달  
 [회원만남]1월 11일 차OO 회원 만남 및 회원특별상 전달  
 [공문]1월 13일 차OO 소령 징계 관련 단체 탄원서 발송  
 [공문]1월 20일 주OO 경장 징계 관련 단체 탄원서 발송  
 [공문]1월 29일 여수시 아주타운 도,시보조금 부정수령 단체 의견서 발송  
 [운영위]1월 30일 1차 운영위
- [탄원서]2월 13일 김OO 가족여성연구원 해임 관련 탄원서 발송  
 [기자회견]2월 14일 성공회유지재단 축제수입금 횡령 관련 고발 기자회견  
 [입장서]2월 14일 민주당의 임OO 교수 고소 관련 단체 입장서  
 [의견서]2월 26일 순창요양병원 엄중처벌 남원지청에 단체 의견서 발송  
 [의견서]3월 10일 이OO 운영위원에 대한 이용선 후보의 방해금지가처분 신청 기각 촉구 단체 의견서 발송
- [의견서]4월 1일 이OO 운영위원 집회시위 관련 중선관위에 의견서 발송  
 [총회]4월 4일~7일 제4회 온라인 서면 총회 진행  
 [간담회]4월 24일 운영위-고문단 간담회  
 [피켓팅,의견서]4월 27일 유OO 前국장 변호사 등록심사위 관련 대응  
 [민관협의체]5월 21일 서울시교육청 2020년 1회 민관협의체 협의회 회의
- [간담회]6월 12일 한국투명성기구 주관 공익신고자 보호 관련 법안마련 회의(OGP)  
 [의견서]6월 25일 부천시 박물관 부정비리행위에 대한 의견서 발송(부천시)  
 [공문]6월 25일 흥사단 내부 공익제보 관련 권익위 3개 단체 연대공문 발송  
 [간담회]6월 27일 나눔의 집 공익제보 간담회  
 [기자회견,성명]6월 30일 김OO 회원 군납비리 공익제보 관련 기자회견 및 성명 발표  
 [회의]6월 30일 투명성기구 주관 공익신고자 보호 관련 법안마련 2차 회의(OGP)
- [성명]7월 3일 故최숙현 선수 관련 성명 발표  
 [회의]7월 9일 흥사단 내부 공익제보 관련 3개 단체 연대회의  
 [의견서]7월 21일 효성그룹 입찰비리 관련 공익제보 의견서(국민권익위)  
 [의견서]7월 28일 부천문화원 비리행위 관련 의견서(부천시)  
 [의견서]7월 28일 부천시 박물관 부정비리행위 및 신고자 보호조치 촉구 의견서(의견서) 및 보



도자료 배포

[공문]7월 29일 흥사단 내부 공익제보 관련 권익위 보호조치 촉구 3개 단체 연대공문 발송

[의견서]8월 11일 공익제보자 특별채용 권고 이행에 대한 3개 단체 의견서(서울시 교육청)

[회의]8월 20일 교육청 민간협의회

[탄원서]8월 28일 배OO 회원 탄원서

[연대성명]8월 26일 안OO 운영위원 특별채용 관련 간담회 연대서명

[공동성명]9월 2일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부패행위 공익제보자 보호에 대한 3개 단체 공동 성명

[인터뷰]10월 5일 아카마지 유튜브 단체 인터뷰

[의견서]10월 7일 여성가족부 공익제보 관련 3개 단체 공동 의견서(여성가족부)

[탄원서]10월 12일 교통공사 공익제보자 탄원서

[진정서]10월 28일 부천문화원 비리행위 관련 진정서

[성명]10월 31일 이명박 구속 관련 김경준 입장 발표

[hang]11월 5일 성공회 유지재단 고발 불기소 처분 관련 검찰hang

[토론회]11월 10일 IACC 국제반부패회의 사전 토론회

[성명]11월 24일 연합뉴스 정부보조금 방만 사용에 대한 공익제보 관련 성명

[운영위]11월 28일 4차 운영위

[IACC]12월 4일 IACC 국제반부패회의 토론회

[행사]12월 6일 서촌 걷기 행사

[회의]12월 15일 흥사단 내부 공익제보 관련 3개 단체 연대회의

[연대]12월 22일, 24일, 29일 안OO 운영위원 학교 복귀 촉구 서울시교육청 앞 피켓팅

## 1 2020년 사업보고

### □ 총평

- 내부제보실천운동 2기 운영위의 안정적인 정착과 운영을 통해 단체 운영 체계가 확립되고, 논의와 소통 구조가 원만했음. 적절한 시기에 대표단과 운영위원을 충원하며, 단체의 내부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 연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 사태로 인해, 규모 있는 사업을 진행하기는 어려웠음. 여러 사업들을 기획하고 추진하였으나, 대부분 무산되었음. 그럼에도 지속적인 상담과 시의적절한 고발, 기자회견, 입장서 발표 등으로 단체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고, 제보자 지원을 중심으로 활동하였음. 그 결과 적절한 시기마다 내부고발의 이슈를 사회적으로 부각시켰고, 다양한 층위의 내부고발자들에 대한 지원의 폭을 확장하였음.
- 단체와 관계를 지속해온 내부고발자 외에도 많은 내부고발자들이 단체와 함께 하였고,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안부터, 개별적인 사안까지 공익제보 전반을 아우르며, 다양한 형태로 제보자 지원을 위해 노력하였음.
- 다만, 여러 지원과 노력에 비해 실질적으로 문제와 사안이 해결된 성과적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있음. 문재인 정권에서의 진영논리에 따른 정치권의 혼란 상황과 코로나 사태 등으로 제보자들의 실태와 문제를 사회적으로 확장시키는 단계로 넘어가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크게 성과를 거둔 사안이 많지 않아 향후 과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음.
- 매년 목표로 하였던 입법 활동과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은 이번에도 실제 사업화 되지 못하였음. 사업의 실효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동시에 보다 생산적인 장기 사업계획 구상이 필요함.
- 회원의 증감 폭이 작년 수준으로 유지 되었으나, 코로나 사태 등으로 회비는 납부율은 소폭 감소하였음. 그럼에도 상황에 맞는 재정운영으로 큰 어려움 없이 단체를 운영하였음.
- 한편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 민관협의회 참여를 통해 타 시민단체들과 연대관계를 구축하였고, IACC 국제반부패회의 기획 및 참여를 통해 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단체의 위상을 사회적으로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음.
- 계속 반복되는 재정적 어려움과 조직 확장 등이 이번에도 중요한 과제로 여겨지며, 대표단과 운영위의 체계를 개편 및 강화하여, 내부고발자 지원 역량을 강화해야 함.

□ 주요 사업성과

- 성공회유지재단 축제수입금 횡령 관련 고발
- 유선주 前국장 변호사 등록심사위 대응
- 한국투명성기구 주관 공익신고자 보호 관련 법안 마련
- 나눔의 집 공익제보 간담회 및 활동 지원
- 김영수 소령 군납비리 공익제보 관련 기자회견
- 흥사단 내부 공익제보 관련 3개 시민단체 연대 대응
- 아카마지 유튜브 단체 인터뷰
- IACC 국제반부패회의 사전 토론회 및 본 토론회 참여 및 발제
- 서촌 걷기 행사
- 안종훈 선생님 학교 복귀 촉구 대응

□ 한계

- 제보자 지원 과정에서 확실한 성과 부족에 대해 인식하고,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함.
- 단체 차원에서 내부고발자에 대한 상담과 지원의 전문성과 전문적 네트워크 마련이 필요함.
- 조직 확장과 재정마련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마련이 필요함.

### 내부제보실천운동 2020 주요 활동보고

활동내용		성공회유지재단 고발 기자회견			
일시	02.14	장소	대한성공회서울주교좌성당	참여인원	약6명



활동내용		유00 前공정거래위 국장 변호사 등록심사위 대응			
일시	04.27	장소	대한변호사협회	참여인원	약 2명



활동내용		나눔의 집 공익제보 간담회			
일시	06.27	장소	한국종합기술 2층 회의실	참여인원	약 20명



활동내용		군납비리 공익제보 관련 기자회견			
일시	06.30	장소	광화문 정부청사 앞	참여인원	약 6명



활동내용		IACC 국제반부패회의 토론회			
일시	12.04	장소	서울시교육청	참여인원	약 10명

세바시 국제반부패회의(IACC) 워크숍  
**강요된 침묵! 그러나 진실을 깨우는 공익제보!**  
 (Silence was Forced, and Whistleblowing Reveals Truth)  
**일시** 2020. 12. 4.(금) 18:00-19:30  
**주최** 서울특별시교육청, 종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오무라기재단, 내부제보실천운동  
**주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  
**주최**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와 공공기관의 역할  
**참여 방법** 줌(Zoom)과 유튜브를 계정을 통한 실시간 시청  
 IACC 홈페이지: <http://www.iacc2020.com>에서 신청 가능  
 참가 안내페이지: <http://www.iacc2020.com/registration>  
 유튜브 채널: "서울특별시교육청, 종로부 책방에서 시청 가능" → [https://www.youtube.com/user/SeoulGovNews/clip\\_001m38a01](https://www.youtube.com/user/SeoulGovNews/clip_001m38a01)  
[blog.naver.com/seouledu2012](http://blog.naver.com/seouledu2012)

활동내용		IACC 국제반부패회의 사전토론회			
일시	11.10	장소	서울시 교육청	참여인원	약10명



활동내용		안00 운영위원 복귀 촉구 피켓팅			
일시	12.22, 24,29	장소	서울시 교육청	참여인원	약 4명



활동내용		서촌 걷기 행사			
일시	12.06	장소	서촌	참여인원	약 6명



**2** 2020년도 결산서

○ 결산(2020.1.1. ~ 12.31.)

수 입				지 출				
항	목	금액	비고	관	항	목	금액	비고
이월금	이월금	550,234		경상비	일반 관리비	임대료	600,000	
						CMS 사용료	660,000	
회비수입	정회원회비	9,637,500				통신/발송	595,809	
						소모품비/교통비	619,020	
후원수입	후원금	1,900,000			행사비	행사,기자회견 등	208,530	
사업수입	행사수입	0			기타	업무추진비	368,500	
기타수입	결산이자 등	94,616			<b>소계</b>		<b>3,051,859</b>	
				사업비	내부제보 지원	상담센터	127,000	
						이문옥밝은사회상	1,000,500	
					회의비	총회	0	
						운영위	102,200	
				워크샵	회원워크샵	0		
				<b>소계</b>		<b>1,229,700</b>		
				인건비	급여	활동가급여	7,405,500	
					<b>소계</b>		<b>7,405,500</b>	
				예비비	예비비	경조비	116,000	
						기타(세금,수수료 등)	7,400	
					<b>소계</b>		<b>123,400</b>	
<b>총 수입</b>		<b>12,182,350</b>		<b>총 지출</b>		<b>11,810,459</b>		
				2019년 잔액 (수입-지출)		371,891		



## 제 3호 의안

# 3기 대표단, 감사 선출 및 상임고문단 추대의 건

의결 주문 : 상임대표, 감사 임기만료에 따라 3기 대표단 및 감사를 선출  
하고, 상임고문단을 추대 하다

제의 관계 조항 : 정관 제 15조 2항

### 3기 상임대표 및 감사 추천 안(가나다 순)

#### 상임대표(3인)

**김주언**(85년 보도지침 폭로사건 언론공익제보자, 現 상임대표)

**박헌영**(국정농단 내부제보자, 現 상임대표)

**김형남**(변호사, 現 상임대표)

#### 감사(1인)

**이석만**(불교닷컴 대표, 現 감사)

### 3기 상임고문단 추대 건(가나다 순)

**백찬홍**(내부제보실천운동 現 상임고문)

**송병춘**(내부제보실천운동 現 상임대표)

**이지문**(내부제보실천운동 現 상임고문)

# 제 4호 의안

## 2021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의 건

의결 주문 : 2021년 사업 계획(안) 및 예산(안)을 승인하다

제의 관계 조항 : 정관 제 15조 3항, 제 15조 5항

## 1 2021년 내부제보 사업계획(안)

### □ 정세 및 과제

-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해 상반기까지는 규모 있는 사업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정치권에서는 진영논리에 따른 분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또한 공익제보 활동이 사회 전반에 확장되고 있음에도 사회적 이슈로 파급력을 갖기에는 여러 제반이 부족한 실정임.
- 20년부터 현재까지 연결되고 있는 제보활동 지원의 폭을 확장하여, 이에 대한 저원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긴밀한 노력과 고민이 필요. 더불어 매년 관성적인 사업으로 제출되었던 입법 활동에 대한 사업을 유보하고, 현재 정세에 맞는 새로운 사업 발굴이 필요함.
- 단체의 내적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상담을 비롯한 공익제보자 지원에 대한 인프라와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 제보자 상담에 대한 질적 역량 확충이 필요.
- 단체 결성 5년 차를 맞이하여, 조직의 질적,양적 확장이 필요. 신규 회원을 비롯하여 회원 간 유대감과 연대관계 구축이 필요.

### □ 사업목표

- 내부고발자 지원을 위한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 친목 및 연대 사업 확장을 통해 회원 간 유대관계 형성.
- 타 시민단체와 지속적인 연대관계 구축을 통한 공동 사업 진행.
- 제보 활동에 대한 적극적 연대와 실질적 성과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 □ 역점사업

- 제보자 상담지원 :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문가 그룹을 형성하고, 상담 및 지원에 대한 체계 마련.

- 연대 사업 강화 : 코로나 사태로 연기되었던 내부 워크샵 및 연대 사업 강화
- 단체 확대 사업 : 단체 회원 증대 및 규모 확장을 위한 제보자 소통 사업

□ 기타사업

- 조직사업 : 1년에 최소 1회의 회원 워크샵 진행.
- 홍보사업 : SNS,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단체 및 단체 활동 홍보
- 캠페인 사업 : 정세에 따라 내부고발자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진행
- 청소년 공익제보 서포터즈 :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과 환경을 주제로 공익제보와 연계한 서포터즈 사업화
- 연대 사업 : 타 시민단체 및 공익제보자들과의 연대관계 구축
- 공익제보자 권익 침해 사례조사 및 대응

□ 기대효과

- 내부고발자 권익 증진과 사회적 인식 개선
- 단체의 내부적 조직 강화를 통해, 공익제보 활동의 구심점 마련
- 내부고발자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으로 제보활동 촉진

□ 사업예산 총액 : 총액 21,317 천원

□ 세부사업계획

1) 회 의

- 총회개최(연 1회)
- 운영위원회(분기별 1~2회)

## 2) 제보자 지원활동

-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문가 그룹 형성 및 네트워크 마련으로 제보자 지원활동의 전문성과 체계성 강화

## 3) 조직 활동

- 회원 워크샵 : 회원 워크샵을 진행하고, 지속적인 소통창구 마련

## 4) 홍보활동

- SNS 활용 : SNS, 홈페이지 등을 활용  
 - 캠페인 진행 : 공익제보자 인식개선 및 신고절차 매뉴얼 등  
 - 청소년 공익제보 서포터즈 : 청소년 대상으로 공익제보의 의미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서포터즈 사업 진행. 서울시 사업공모, 단체 및 개인과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공동사업으로 진행.

## 5) 연대사업

- 내부제보자 투쟁현장 상시연대 : 현재 진행 중인 투쟁현장을 확인하여, 적극적인 연대 활동 전개  
 - 타 시민단체와 연대관계 구축 : 연대관계 구축을 통해 공동사업 모색

## 6) 단체 확대 사업

- 단체 회원 증대 및 규모 확장을 위한 제보자 소통 사업

**2** 2021년도 내부제보실천운동 예산(안)

수 입				관	지 출				
항	목	금액	비고		항	목	금액	비고	
회비수입	정회원회비	12,000,000		사업비	내부제보 지원	제보자지원	1,000,000	연대사업 포함	
후원수입	후원금	7,000,000				상담지원	800,000		
사업수입	행사수입	2,000,000				이문옥밝은사회상	5,000,000	20년, 21년	
전년도 이월		371,891			회의비	총회	100,000	온라인 예상	
						운영위원회	500,000		
					워크샵	회원워크샵	800,000		
					홍보비	홍보기획비	300,000	서포터즈 등	
						소계	<b>8,500,000</b>		
					경상비	일반 관리비	임대료	600,000	
							CMS 사용료	660,000	
				통신/발송비			800,000	우편 등	
				소모품비			500,000		
				교통비			400,000		
				행사비		송년회	2,000,000		
				기타		업무추진비	300,000		
					소계	<b>5,260,000</b>			
				인건비	인건비	활동가급여	7,200,000	60만×12	
						용역급여	-		
						퇴직급여	-		
						4대보험	-		
						후생기타	-		
						소계	<b>7,200,000</b>		
				예비비	경조비	300,000			
					기타	111,891	수수료 등		
					소계	<b>411,891</b>			
수입		<b>21,371,891</b>			지출		<b>21,371,891</b>		

# 제5호 의안 기타 안건





# 부 록

\*정관

\*회원명단



## 내부제보실천운동 정관

제 정 : 2017년 3월 15일

1차개정 : 2018년 1월 31일

2차개정 : 2019년 2월 27일

### 제1장 총 칙

#### 제1조 [명칭]

이 모임은 '내부제보실천운동'이라 한다.

#### 제2조 [목적]

본 단체는 공익을 위한 공직자와 시민들의 자발적인 제보를 활성화하고 내부제보자를 보호하는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부정부패 없는 맑고 투명한 사회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구성]

본 단체는 제2조의 목적에 찬동하여 가입한 회원들로 구성하며,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한다.

#### 제4조 [사업]

① 본 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의 활동과 사업을 전개한다.

1. 내부제보의 상담, 안내와 지원 등을 통한 내부제보자 권익 보호 사업
2. 내부제보사건의 신고 및 조사 담당기관 및 수사기관의 공정한 처리 촉구
3. 공직기관, 기업체, 학교 대상 내부제보 활성화 교육 및 캠페인
4. 내부제보자 보호를 포함한 반부패 법률 및 조례의 제·개정 사업
5. 내부제보자 보호를 위한 공익재단의 설립 준비와 지원
6. 본 단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국내외 단체와 연대활동
7. 그 밖의 본 단체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본 단체는 제2조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 제5조 [소재]

본 단체의 사무소는 서울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방 및 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 제2장 회 원

### 제6조 [회원]

1. 본 단체의 설립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은 회원이 된다.
2. 회원은 일반회원, 후원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3. 각 회원의 가입절차와 회비는 내규로 정한다.

### 제7조 [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본 단체의 운영과 의사 결정에 참여할 권리
2. 본 단체 내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권리

### 제8조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본 단체의 정관 및 내규를 지킬 의무
2. 본 단체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3. 회비를 납부할 의무

### 제9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제10조 [자격 상실]

회원으로써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본 단체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에 대해서는 내규에 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 제11조 [회원모임협의회]

- ① 본 단체 회원은 사무처와 협의하여 회원모임을 결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 ② 회원모임의 활성화와 모임 상호간의 협력을 위하여 회원모임으로 구성된 회원모임협의회를 둘 수 있다.
- ③ 회원모임협의회는 자치적으로 회장과 부회장을 둘 수 있고, 본 단체의 목적과 사업의 취지 안에서 자율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 ④ 회원모임과 회원모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 제3장 기 구

### 제1절 총회

#### 제12조 [지위]

총회는 본 단체의 최고의결기구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 제13조 [소집과 방식]

- ①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안에 연 1회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재적 회원 1/10이상 이나 감사의 요구,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 ② 총회의 소집은 상임대표 전원의 명의로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총회의 의장은 상임대표 중 연장자가 맡으며, 상임대표 불출석시에는 공동대표 중 연장자가 맡는다.
- ④ 필요한 경우 인터넷을 이용한 총회를 진행할 수 있다.
- ⑤ 인터넷을 이용한 총회에서의 토의, 의결 등 구체적인 운영 방법은 내규로 정한다.

#### 제14조 [정족수]

- ① 총회의 정족수는 재적회원의 과반으로 한다.
- ②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③ 총회의 구성원이 불출석할 경우, 출결 및 안건의 의결권을 출석 회원에 위임할 수 있다.

#### 제15조 [권한과 의결사항]

- ① 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결정한다.
  1.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공동대표 및 감사의 선출 및 해임 등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6. 본 단체의 해산에 관한 사항
  7. 운영위원회가 심의를 요청한 사항
  8. 감사가 심의를 요청한 사항

9. 기타 본 정관에서 총회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

② 총회는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그 권한을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 제2절 운영위원회

### 제16조 [운영위원회의 지위]

운영위원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다음 총회 때까지 본 단체의 조직과 운영, 사업과 활동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토의하고 의결하는 기구다.

### 제17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당연직 운영위원과 위촉직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운영위원은 상임대표를 포함한 공동대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 사무처 책임자, 각 회원모임의 대표로 한다. 단, 회원모임의 대표에 대한 기준과 범위는 내규로 정한다.

③ 위촉직 운영위원은 법률지원단장, 상담센터 소장 등 본 단체에서의 역할을 감안하여 15명 내외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는 상임대표 전원 명의로 소집하며,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상임대표들간의 협의로 정하여 회의를 주관한다.

### 제18조 [운영위원회의 소집]

운영위원회는 연 2회 소집하는 정기 운영위원회와 감사 및 운영위원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는 임시 운영위원회로 구분한다.

### 제19조 [운영위원회의 의결]

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 구성원 재적 1/3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상임대표단은 운영위원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 의결에 부의할 수 있다. 서면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그 결과를 차기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 추인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 운영위원 1/3이 운영위원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상임대표단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제20조 [운영위원회의 권한]

① 운영위원회는 상임대표 및 각 위원회의 장, 법률지원단장의 선출과 상담센터 소장을 임면하고, 각 활동기구 및 부설기관의 장을 임명하며, 각 회원모임에서 선출된 회원모임 대표 및 회원모임협의

회 대표를 인준한다.

- ② 운영위원회는 본 단체의 사업과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각 활동기구를 조직·관리하며, 예산을 편성·집행하며 이를 위해 사무처를 설치·운영한다.
- ③ 운영위원회는 각 위원회와 각 부설기관의 활동을 지원한다.
- ④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결의할 수 있다.
- ⑤ 본 단체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상임대표, 공동대표, 상임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 사무처 책임자가 부의하는 사항
- ⑥ 본 정관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본 단체의 운영 등에 관한 제반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제3절 공동대표, 상임대표, 고문, 자문위원, 감사 등

#### 제22조 [공동대표 및 상임대표]

- ① 공동대표는 본 단체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공동대표는 10인 내외로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 운영위원회를 통해 공동대표 중 3인 내외를 상임대표로 선정할 수 있다.
- ④ 상임대표는 본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사무처를 지휘 감독한다.

#### 제23조 [고문 등]

- ① 운영위원회는 내부제보활동 및 사회투명성 발전에 공헌이 있는 자, 공동대표 등으로 활동한 전직 임원 등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10명 이내의 상임고문을 둔다.
- ② 운영위원회는 각계 전문가 및 내부제보자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고, 상임대표는 필요에 따라 자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 ②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24조 [법률지원단 등]

- ① 원활한 상담 및 법적 지원과 관련 법령 제정 및 개정 등을 위해 전문가들로 법률지원단을 구성한다.
- ② 법률지원단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③ 법률지원단의 단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 상담 및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제반조치의 안내를 위하여 상담센터를 둘 수 있고, 상담센터 소장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임명할 수 있다.

#### 제25조 [감사]



- ① 본 단체의 사업과 재정을 감사하기 위해 2명의 감사를 둔다.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 감사는 본 단체의 운영과 관련하여 비위의 사실이 있거나, 감사 결과 긴급한 의결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절 위원회, 활동 기구, 사무처, 후원회**

제26조 [위원회]

- ① 본 단체는 기획, 재정, 홍보, 조직, 대외협력 등의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본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상임 위원회를 둘 수 있고,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해당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분야별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회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각자 희망에 따라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각 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추대한다.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7조 [활동기구]

- ① 본 단체의 목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활동기구 및 산하기관을 둘 수 있다.
- ② 각 활동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 ③ 각 활동기구는 본 단체의 목적과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전체 사업취지의 범위 안에서 자율적인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제28조 [사무처]

- ① 본 단체의 실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 ② 사무총장은 본 단체의 실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③ 사무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사업계획에 따른 사무와 일상적인 업무를 벗어난 사무에 관하여는 상임대표의 재가를 받아 시행하며, 사무처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진다.
- ④ 사무처에는 사무총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내규에 정한 바에 따라 사무국장, 사무처장 등의 직책을 둘 수 있으며, 사무총장이 궐위 시 사무국장, 사무처장의 순으로 그 업무를 대행한다.
- ⑤ 사무국장과 사무처장은 집행위원회에서 선임하며, 사무처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29조 [후원회]

- ① 본 단체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건전한 육성 발전을 재정적으로 후원하기 위하여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② 후원회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상임대표가 위촉한다.

## 제5절 지역조직, 부설기관

### 제30조 [지역조직]

본 단체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지역조직을 둘 수 있다.

### 제31조 [부설기관]

본 단체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 제4장 재 정

### 제32조 [회계 연도]

본 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33조 [예산과 결산]

- ① 사무총장은 다음 해 예산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당해 연도 총회에서 추인받아야 한다.
- ② 사무총장은 회계연도 경과 2개월 내에 예산회계준칙에 따라 감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전년도 결산 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총회에서 추인받아야 한다.

### 제34조 [수입]

본 단체의 수입은 회원 회비, 후원금, 특별 모금, 기타 수익으로 한다.

## 제5장 정관개정

### 제35조 [정관 개정]

- ① 본 단체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의 과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의결한다.
- ② 개정안은 총회 개최 7일전까지 회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 제6장 해산

제36조 [해산 사유]

본 단체는 아래의 사유가 있을 때 해산한다.

- ① 설립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
- ② 설립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
- ③ 기타 설립 취지에 따른 단체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정이 있을 때

제37조 [해산 절차]

- ① 전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총회에서 재적회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을 결정한다.
- ② 해산 결정과 함께 청산에 필요한 업무 처리를 위해 총회에서 청산위원회를 구성한다.

제38조 [잔여 재산의 귀속]

본 단체가 해산하는 경우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단체의 설립 취지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시킨다.

**제7장 보칙**

제39조 [정당활동 등의 제한]

대표단, 사무총장, 각 위원회의 장이 공직에 취임할 경우 또는 공직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사임하여야 하고, 공직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본부의 주요 직책을 맡거나 상임 선거운동원으로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직의 권한이 정지되며 선거활동 종료 이후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복귀할 수 있다.

제40조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 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명부,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 ②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해당 월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월별 수입내역과 사용내역을 공개하도록 한다.
- ③ 기부금은 사익이 아닌 공익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불특정다수로 한다.

제41조 [준용 규정]

- ①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 원칙과 내규에 따른다.
- ② 내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 부 칙

### 제1조(시행)

본 정관은 2017년 1월 16일 창립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본 정관은 2018년 1월 31일 정기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본 정관은 2019년 2월 27일 정기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까지 단체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 및 창립총회의 의결, 준비위원회의 의결은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내부제보실천운동 회원명부**

고혜영	김주언	안종수	전영숙
권승구	김 준	안종훈	정미현
권오영	김태빈	안천식	정유진
권희청	김현진	양시경	정현경
김기홍	김형남	오현석	조대희
김나린	김희정	유인정	조성강
김도리	류수연	유혜림	조승현
김동숙	문성훈	이경애	조재현
김명환	박광서	이도희	진웅용
김미덕	박오복	이민경	차성복
김미현	박종린	이상훈	최현주
김민규	박헌영	이석만	최홍범
김상균	박헌배	이영이	하윤옥
김서중	배병태	이종인	한경호
김성환	배현봉	이지문	한만수
김연숙	백수인	이지윤	허태곤
김영수	백찬홍	이춘미	형근희
김영숙	석지관	이탁연	황성연
김영인	송병춘	임미리	황운주
김은영	신광식	장경선	
김이슬	신현철	전경원	

